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41

발의연월일: 2021. 12. 1.

발 의 자:김승남·홍정민·윤재갑

송갑석 · 민병덕 · 이상헌

주철현 · 서동용 · 위성곤

이수진(비) · 고영인 · 김정호

정청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소유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나무심기, 숲가꾸기, 목재수확 등 단계별로 산림사업을 실시하고 특히, 목재수확을 위해서는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사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하여야 함.

벌채의 허가, 신고 수리를 위해 사전에 사업예정지를 답사하고 계획의 타당성,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원칙의 부합성, 경관 및 재해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벌채 허가·신고 신청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일시에 업무량 폭증, 담당자의 주기적인 인사발령 등으로 전문적·세부적인 검토가 어려우며, 현행법은 벌채허가 신청·신고에 따른 통지 기간을 허가의 경우 7일, 신고의 경우 5일 이내로 정함에 따라 충분한 기간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목재수확 시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능선부, 계곡부 등에 일정 면적을 남기도록 하고 있으나, 제도적 뒷받침이미비하여 산림소유자, 사업시행자 편의에 따라 벌채가 이루어지고, 합리적인 목재수확을 위한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목재수확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산림관리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입목벌채 등의 적합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 시 지역 산림현황, 산촌·문화적 특성 등을 반영한 효율적인 산림이용을 심의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둘 필요가 있음.

아울러, 목재수확 계획 수립 시 생태·경관·재해위험 등을 고려한 일정 면적을 남기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남기는 면적으로 인해 산림소 유자가 부담하는 손실을 국가차원에서 지원 하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 침이 필요함.

한편, 종묘생산업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조림용 묘목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종묘생산업의 실질적 폐업 등 회복할 수 없는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안 제16조의2, 제36조, 제36조의4 및 제36조의5 신설).

법률 제 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과징금의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내용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4항"을 "경우와, 제5항"으로,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를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로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

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생태·경관·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벌채한 경우 벌채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의4 및 제3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6조의4(입목벌채 등의 사전 타당성조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 등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허가 이전에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입목벌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산불, 산림 병해충, 산사태와 같이 산림재해 발생에 따른 입목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전문기관은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 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를 입목벌채 등이 완료된 후 3년 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할 서류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전 타당성조사의 절차·기준·방법 등과 전문기관의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5(입목벌채 등의 심의위원회) 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입목벌채 등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구성, 위원의 임면(任免),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과징금 처분) ①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해 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 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 과하는 위반행위의 내용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 고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정한다.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④ (생략)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 ⑩ (생 략)

나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
라 허가를 받고 생태·경관·
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벌채한
경우 벌채 비용의 일부를 예산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u>⑥</u>
<u>경우와, 제6항</u>
<u>산</u>
림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
$\underline{7}\sim\underline{\mathbb{1}}$ (현행 제 6 항부터 제 10
항까지와 같음)
제36조의4(입목벌채 등의 사전
타당성조사 등) ①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
모 이상의 입목벌채 등에 대하
여 제36조에 따른 허가 이전에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

문기관을 통해 입목벌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산불, 산림병해충, 산사태와 같이 산림재해 발생에 따른 입목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전문기관은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나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를 입목벌채 등이 완료된 후 3년까지 보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할 서류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전 타당성조사의 절차· 기준·방법 등과 전문기관의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신 설>

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5(입목벌채 등의 심의위 원회) 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 채 등의 허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입목벌 채 등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구성, 위원의 임면(任免),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